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66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모경종·김준혁·주철현

김동아 • 이기헌 • 박민규

곽상언 • 황정아 • 김병기

황명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한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매매 거래의 상품으로서 거래를 위한 일시적·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며, 사용이나 소유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위한 행위, 즉 실질적 취득이 아니기 때문 에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모든 취득세 감면 규정은 감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1회성 취득에 해당하나,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 반복적 취득의 상품으로 자동차 본연의 운행 목적이 아님에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200만원"을 "200만원(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 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 으로 취득(「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 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 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년 12월 31일----..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제한) ①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 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 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 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

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u>200만원</u> 이하

·
1
عال مرمحا فا (عاده -
가 <u>200만원(제68조</u>
제1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

나. (생 략) 2. (생 략) ② · ③ (생 략) <u>300만원)</u>-----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